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10. 6.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심형석, 주무관 황우관 • ☎ (044) 201-3835, 4996, 4710	
	모빌리티 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준상, 사무관 이보연 • ☎ (044) 201-3817, 3819	
보 도 일 시		2020년 10월 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6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결함보상 안 한 렌터카, 대여 못 한다

- 10월 8일 이전 결함차량은 3개월 이내 시정조치(리콜)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시행되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(리콜)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
 -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.
 - 또한,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월 8일(법 시행 후 3개월)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,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- 아울러, 결합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합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합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(KATRI)에서 결합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“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”에게도 결합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,

* KATRI-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·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('20.7)

- “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”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“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
- “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심형석 사무관 (☎044-201-499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